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0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지식경제부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, 김열규 사무관(2110-5334)		

구조조정기업 수출, 무역보험 특별 지원

【지원대상】 신용장 등 확실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
【지원상품】 수출신용보증(1,000억원 한도) 및 단기수출보험(한도 무제한)
【지원기간】 '12.11월~'13.6월까지 한시 특별 지원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,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

* 금번 특별지원계획은 10.5일(금), 비상경제대책회의의 "최근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"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

○ 그간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,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하여 지원에 소극적이었음

□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 등을 위해 법정관리·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

○ 또한,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기업이 확대될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었음

□ 이에,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됨

○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, 외국정부·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,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·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임

-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,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,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

○ 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(이하 무보)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·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

-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무보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

○ 일정 금액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보의 경력직원을 관리책임자(PM)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,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,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임

- 다만,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할 계획임

□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,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원기간 연장,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

○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,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◈ 제도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지경부 수출입과 : 김열규 사무관(02-2110-5334)**
○ **무보 제도개선팀 : 이일호 팀장(02-399-6584), 신동금 부팀장(6219)**

참고 **현행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제도**

1 수출신용보증

가. 선적전 수출신용보증

□ **(개요)**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원부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,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



□ **(지원대상 거래)** 일반수출, 위탁가공무역 등에 대해 지원

-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
-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(제작금융 등)
-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장 개설
- 수출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무역보험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등

□ **(운영방식)** 회전보증과 개별보증으로 대별

구분	내용
회전보증	•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내에서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•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남 ⇨ 일정규모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이용하기에 적합
개별보증	•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근거로 1회에 한해 운용 ⇨ 소규모 수출실적 또는 일시적 자금수요가 발생 수출기업 이용에 적합

□ **(보험료 산정)** 보증기간 및 수출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, 일반적으로 보증비율이 90% (부분보증제 운영)

□ **(지원실적)**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상품

구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.9년
지원규모(조원)	0.8	1.1	4.5	4.4	3.3	2.0

나. 선적후 수출신용보증

□ **(개요)** 금융기관이 수출거래 관련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출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출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



□ **(지원대상 거래)**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일반수출거래

- 단기수출보험 연계 운영(수입자 귀책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)
- 회전한도로 운영(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,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)

□ **(보험료 산정)**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, 일반적으로 보증비율이 100% (전액 책임보증)

○ 연계 운영되는 단기수출보험 종목의 보험료는 별도로 추가 납부

□ **(지원실적)** 중소기업의 수요가 큰 상품

구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.9년
지원규모(조원)	0.3	0.5	1.4	1.8	2.6	2.4

2 단기수출보험

□ **(개요)**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,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수출자 손실을 보상



□ **(지원대상 거래)** 일반수출, 위탁가공무역 등에 대해 지원

구분	내용
일반수출거래	국내에서 생산·가공·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
위탁가공무역	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•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
중 계 무 역	수출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
재 판 매	수출자의 해외지사(현지법인 포함)에 물품을 수출하고,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

□ **(운영방식)** 개별보험 혹은 포괄보험 형태로 지원

○ 개별보험 : 보험부보 여부를 거래건별로 선택 가능

○ 포괄보험 : 수출기업이 부보대상거래를 정한 후 협약체결 건에 대해 전부를 보험에 가입,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 50~75% 할인

□ **(보험료 산정)** 보험가액, 신용도를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

구분	내용
보험가액	수출대금의 금액 (분할선적시 각 금액의 합계)
부 보 율	대기업 95%, 중소기업 100%
보험금액	보험가액 × 부보율
보험요율	수입자·수입국 신용도,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

□ **(지원실적)** 무역보험 상품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상품

구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.9년
지원규모(조원)	65.2	94.6	144.2	161.8	169.3	133.9